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45호

도시관리계획(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

서울특별시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27-5,6번지	-	증) 1,772.2	1,772.2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 용도지역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시설변경 : 공공청사 폐지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신설)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 기타에 관한 결정 (신설)

- 공개공지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3)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8804)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부 (02-3410-7360)

5. 열람도서 :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4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상산개발 등 594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1. 6. 24 ~ `21. 7. 9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 6. 24 ~ 2021. 7. 9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